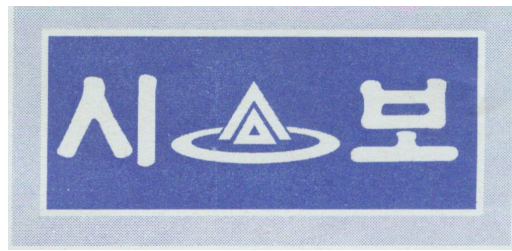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450호 2012. 3. 15.(목)

【훈 령】

- 제197호 공주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1

【고 시】

- 제2012-21호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10
- 제2012-2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11
- 제2012-23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21
- 제2012-24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4
- 제2012-25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6

【공 고】

- 제2012-230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28
- 제2012-266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9
- 제2012-275호 공주시 명예 면·동·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70
- 제2012-276호 유구농공단지 준공인가 공고 75
- 제2012-277호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8
- 제2012-278호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94
- 제2012-282호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19
- 제2012-283호 공주 고도보존계획 승인 127

회							
람							

공주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2012년 3월 15일

공주시 훈령 제 197 호

공주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의 청사와 부속시설을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안전관리자와 임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와 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본청: 소방안전관리자는 회계과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청사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다만, 교동 별관은 별도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2. 직속기관: 소방안전관리자는 청사관리업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청사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3. 사업소 및 읍·면·동: 소방안전관리자는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청사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와 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화기단속책임자와 임무 등) ① 본청의 각 담당관·과·팀,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의 사무실과 부속시설(이하 “책임구역”이라 한다) 마다 화기단속책임자와 부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청: 화기단속책임자는 각 담당관·과장·팀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각 담당관·과·팀의 선임담당주사로 한다. 다만, 부책임자 중 지적서고는 지적업무담당주사로 한다.
2. 직속기관: 화기단속책임자는 청사관리업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청사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3. 사업소: 화기단속책임자는 사업소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청사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4. 읍·면·동: 화기단속책임자는 읍·면·동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읍·면은 부읍·면장으로 동은 사무장으로 한다.

② 화기단속책임자와 부책임자는 그 책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화 및 방화기구의 유지·관리
2. 화기 취급에 대한 지도·통제 및 감독
3. 그 밖에 화기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화기단속책임자와 부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책임구역에서 화기위험상태를 초래하였거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제1차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④ 화기단속책임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화기단속책임직원 1명을 지정하고 화기단속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조(화기단속 순찰) 제3조에 따른 화기단속책임자는 지정된 화기단속책임직원에게 매일 출근시간 30분전 1회, 퇴근시간 경과 후 30분 이내에 1회씩 각각 책임구역을 순찰하도록 하고 화기안전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전 직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관할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의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 및 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자위소방대의 편성) ① 시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위소방대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고, 자위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 각 1명과 지휘반, 진압반, 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둔다.

③ 자위소방대의 대장·부대장과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 지휘·운영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4. 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5. 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응급 처치한다.
 6. 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각 반(班)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한다.
- ⑤ 자위소방대는 대장의 명에 따라 화재발생시 소화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연 1회 이상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이하 “관리업자” 이라 한다)에게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청사
2.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실내 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청사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정밀점검시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의 전기시설물 및 가스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전기시설물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2. 가스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검사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에게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협회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발행한 점검결과보고서 사본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자체소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소방안전관리 책임과 비상조치 등)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소방안전관리에 대하여 화기단속책임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② 당직근무자는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난방기구 관리) ① 난로와 전열기(이하 “난방기구”라 한다)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이 직접 결정 시행한다.

② 본청의 경우에 제1항에 따라 난방기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별지 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없고 난방기구를 설치하여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설치장소의 환경 및 소화기 비치 여부
2. 난방기구 자체의 안전성 여부
3. 그 밖에 난방기구 설비에 따른 전반적인 안전성 여부

④ 난방기구 설치를 허가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허가증을 그 기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⑤ 난방기구 사용 중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비할 때까지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10조(근무시간 중 화재발생시 비상조치 등) 누구든지 화재를 처음 발견한 직원은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근처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구를 사용하여 응급소화 작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비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119 화재신고
2. 화재통지 취명종 취명
3. 시장 및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긴급 보고
4. 그 밖에 필요한 간부 직원에 대한 연락

제11조(근무시간 외 화재발생시 비상조치 등) ① 누구든지 근무시간외에 화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근처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구를 사용하여 응급소화작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비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119 화재신고
2. 당직감독관에게 연락
3. 시장 및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보고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별표 1과 같이 화재발생시 보고 및 연락도를 당직실에 부착하고 화재 발생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장은 자체 실정에 맞도록 작성·비치한다.

제12조(안전지출) ① 화재발생시 중요 문서와 물품의 제1차 안전 지출장소는 시청광장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의 경우에는 적당한 장소로 적의 결정한다.

② 화기단속책임자는 지출을 필요로 하는 중요문서와 물품보관 문서함에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별표 2와 같이 지출 우선순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화기단속책임자는 별표 3의 비상지출대를 사무실내 적정 장소에 보관하고 유사시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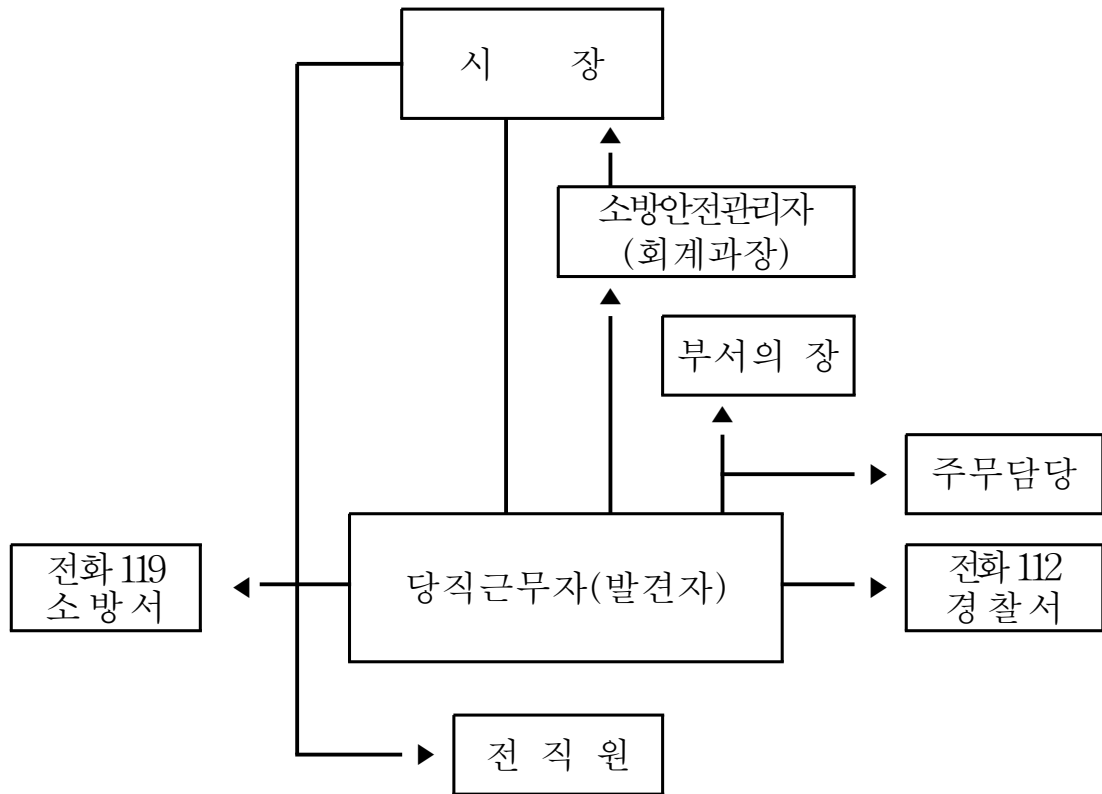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공주시 방화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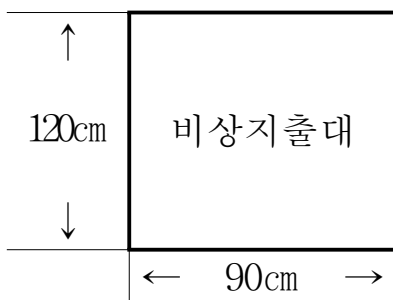
화재발생시 보고 및 연락도



【별표 2】



【별표 3】



【별지 서식】

난방기구 설치 허가신청서 (제9조제2항 관련)

「공주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난방기구를 설치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장소	
2. 난방기구 명칭	
3.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4. 사용연료	
년 월 일 ○○ 담당관 · 과장 · 팀장 (인) 소방안전관리자 귀하	

난방기구 설치 허가증

20 년 월 일로 신청한 난방기구 설치허가에 관하여 「공주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1. 설치장소	
2. 난방기구 명칭	
3.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4. 사용연료	
년 월 일 소방안전관리자 (인) ○○ 담당관 · 과장 · 팀장 귀하	

공주시 고시 제2012 - 21호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공주시 이인면 신흥리 421-3번지의 개간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변경) 승인하였기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9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3. 7.

공 주 시 장

1. 사업의 목적 : 사유 임야를 개간하여 약초재배지로 이용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가. 사업내용 : 개간(약초재배)
 - 나. 사업구역 : 공주시 이인면 신흥리 421-3번지, 7,000㎡
3. 사업비 필요금액 : 금삼천만원정(금30,000,000원)
4. 사업예정기간 : 당초 2009. 12. 1 ~ 2010. 11. 30.
변경 2009. 12. 1 ~ 2012. 5. 31.
5. 사업효과 : 약초재배로 농가소득증대 및 농지이용 효율 확대
6. 사업시행자 : 오 순 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3. 7.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공주시 백제큰길 1384외 29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1)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3.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충청남도 공주시 김상동 595	충청남도 공주시 백제큰길 1384	20090825	역사적특성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380-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신원사로 120	20100112	경천리에서 계룡산 신원사로 가는 길로 신원사로라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구왕리 4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상청소길 119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구왕리 69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흥룡2길 57-8	20120216	마하위룡형의 지형이라 언젠간 크게 흥하는 마을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구왕리 70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흥룡1길 27-7	20100112	마하위룡형의 지형이라 언젠간 크게 흥하는 마을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구왕리 713-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흥룡1길 44-12	20100112	마하위룡형의 지형이라 언젠간 크게 흥하는 마을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46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봉곡길 78-10	20100112	마을 지형상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모양이라 봉곡 또는 새올이라 부르다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6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소와리1길 89	20100112	마을 뒷산이 소가 누운 모양이라 소와리 또는 우와리라 한다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611-7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왕흥장악로 397	20100112	내흥리의 예전 명칭 왕흥과 구왕~중장의 장악고개를 관통하는 도로로, 왕흥장악이라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6-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뫼난댕이길 27-95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632-5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왕흥장악로 427	20100112	내흥리의 예전 명칭 왕흥과 구왕~중장의 장악고개를 관통하는 도로로, 왕흥장악이라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64-16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뫼난댕이길 118-6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655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시화산2길 52	20100112	산에 꿩레꽃이 많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양회리 200-6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보목고개로 363	20100112	하대~양회를 지나는 도로에 보목이라는 이름의 고개가 있어 보목고개길이라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양회리 221-18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보목고개로 343-2	20100112	하대~양회를 지나는 도로에 보목이라는 이름의 고개가 있어 보목고개길이라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양회리 35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양화새터길 9	20100112	새로운 곳에 터를 잡았다 하여 새터 길이라 한다 자연마을 명칭 활용, 다른 지역과 중복되는 도로 명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구역 명칭 첨가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양회리 56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밖쇠실길 27	20100112	쇠가 나오는 마을이며 밖쇠실은 남자를 안쇠한다는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한다 자연마을 명칭을 이용하여 밖쇠실길이라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양회리 58-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신원사로 518-7	20120227	경천리에서 계룡산 신원사로 가는 길로 신원사로라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양회리 65-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셋길 9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 158-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월암승정길 52-13	20100112	소나무 정자가 있어서 승정이라 부르다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다른 지역과 중복되는 도로 명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구역 명칭 첨가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죽곡리 10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아랫대실길 8-1	20100112	대나무가 많은 마을의 아래쪽에 위치한다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죽곡리 96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구부내로 694-35	20120104	넋물이 구불구불 흐른다 하여 구부내라 불렀던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100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왕흥장악로 20-6	20100112	내흥리의 예전 명칭 왕흥과 구왕~중장의 장악고개를 관통하는 도로로, 왕흥장악이라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195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감산수길 20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348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뫼난길 24-47	20100112	목숨을 뫼쳤고 장수하는 마을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69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유산길 91-68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869-1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감사로 126	20100112	계룡면 소재지에서 계룡산 감사로 가는 길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감사로라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885-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감곡길 39-26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684-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서당동길 23-5	20100112	옛날 서당이 있던 마을이라 서당동이라 불린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향지리 12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도림말길 9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향지리 69-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큰골길 14-54	20120227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향지리 산11-1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큰골길 60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화은리 465-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전진배길 235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화은리 498-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가마울길 53	20100112	마을의 지형이 가마솔처럼 생겼다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화은리 549-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거사원길 12-16	20100112	선비가 배출되는 곳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교동 211	충청남도 공주시 향교길 30	20100112	역사적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197-1	충청남도 공주시 미나리3길 9	20100112	지역특성 반영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198-3	충청남도 공주시 미나리2길 10-2	20100112	지역특성 반영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20-10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시장5길 88	2010011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20-52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시장5길 93	2010011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71	충청남도 공주시 금강공원길 26	20100112	지역특성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73-2	충청남도 공주시 느티나무길 71	20100112	지역특성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94	충청남도 공주시 자장방3길 10	20100112	자연마을 명칭 반영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104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47-12	20100202	도로의 끝지점에 연수원이 있고 마을주민 모두가 연수원을 가는길이라 인식, 연수원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613-4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51-17	20100112	자연마을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616-6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41-20	20100112	자연마을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616-9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41-28	20100112	자연마을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618-9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37-44	20100112	자연마을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62	충청남도 공주시 잇말길 33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669-7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27-16	20100112	자연마을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국곡리 21-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국곡길 136	20100112	특국화가 많이 핀다 하여 생긴 자연 마을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 205-4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도남1길 139-15	20100112	행정구역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 205-5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도남1길 139-51	20100112	행정구역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3-3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티고개로 175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45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갈월길 44-12	20100112	찰이 많이 나온다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60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왕흥장악로 798	20100112	내홍리의 예전 명칭 왕흥과 구왕~중장의 장악고개를 관통하는 도로로, 왕흥장악이라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641-8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고비고개길 115	20100112	마을~내홍 사이의 고개이름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비고개 길이라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14-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편던길 52-4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197-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원당1길 55	20100112	마을에 소원을 비는 원당이 있다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53-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금벌로 1714-59	20090825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459-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정광터1길 90-3	20100112	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다 하여 정가터라 불린 후 아원이 변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474-8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티고개로 363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475-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정광터1길 164-13	20100112	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다 하여 정가터라 불린 후 어원이 변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148-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송곡로 341	20100112	송곡리를 관통하는 주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287-10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송곡로 268	20100112	송곡리를 관통하는 주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299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외송1길 26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48-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외송2길 47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252-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온천사기소길 18	20100112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분정사기를 만들던 곳으로 사기를 굽던 마을이라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후 행정구역 명칭 정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원봉리 575-20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황토고개길 26-19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원봉리 575-3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황토고개길 40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242-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하신소1길 9	20100112	신소의 아래편에 마을이 있다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혼합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20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계룡대로 1364	20090825	도로의 끝지점에 계룡대가 있고 마을주민 모두가 계룡대를 향하는 길이라 인식, 계룡대로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329-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1로 50	2010011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44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임금봉길 2	20100112	임금이 앉았던 바위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48-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동월2길 32	20100112	마을 지형이 동이와 같다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60-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동월1길 240	20100112	마을 지형이 동이와 같다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628-1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1로 149	2010011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90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임금봉길 49-10	20100112	임금이 앉았던 바위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93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임금봉길 78-5	20100112	임금이 앉았던 바위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948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임금봉길 88-9	20100112	임금이 앉았던 바위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동 230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안터길 40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후, 다른 지역과 중복되는 도로 명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구역 명칭을 첨가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동 395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길 60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 11-31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길 348-5	20100112	도로가 계실리를 향하여 뻗어있고 도로의 방향성을 고려, 계실길이라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 13-1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도화동길 87	20100112	지금의 도화동은 조골이 변해 도화동이라 했으며 복숭아 나무가 많아 도화동길이라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 147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576	20100112	마곡사를 향하는 길이라 하여 마곡사로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 514-1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683-16	20100112	마곡사를 향하는 길이라 하여 마곡사로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 712-1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가교새알길 50-26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후, 다른 지역과 중복되는 도로 명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구역 명칭을 첨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243-1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양지너분배길 212	20100112	양지편이란 마을과 너분배란 두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로 두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하여 양지너분배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 300-1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단평길 245	20100112	조선시대 초 이마에 단평역이 있었다 하여 단평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부곡리 293-3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부곡산성로 217	20090825	부곡리와 산성리를 관통하는 도로로 두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75-4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운정길 97	20100112	구름재 아래에 마을이 있는데 운중반월의 명당이 있다 한다 구름재 또는 운정이라 불리어 운정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월가리 595-1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정안마곡사로 1334-4	20100112	정안면에서 마곡사를 향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과 마곡사의 명칭을 활용하여 정안마곡사로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해월리 262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해월새뜸길 15	2010020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후, 다른 지역과 중복되는 도로 명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구역 명칭을 첨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484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고순길 19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314-2	충청남도 공주시 창별로 320	20100112	자연마을 명칭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384	충청남도 공주시 퇴아재뒷골길 26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397-2	충청남도 공주시 왕촌길 218	20100112	왕촌이라 불리던 하천을 타고 가는 길이라 왕촌길이라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712-1	충청남도 공주시 유투머길 12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757	충청남도 공주시 건너들길 28-1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762-3	충청남도 공주시 건너들길 32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764-2	충청남도 공주시 건너들길 28-2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764-8	충청남도 공주시 건너들길 30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소학동 165-2	충청남도 공주시 소학동길 165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8-4	충청남도 공주시 흡수골길 49	20100112	역사적특성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65-12	충청남도 공주시 흡수골길 15	20100112	역사적특성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66-10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12	20100112	자연마을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66-22, 266-53, 266-48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9	20100112	자연마을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67-1	충청남도 공주시 변영1로 121	2010020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7, 24-132	충청남도 공주시 변영1로 126	2010020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74-4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25	20100112	자연마을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76-12	충청남도 공주시 변영1로 152	2010020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76-27	충청남도 공주시 변영1로 157-7	2010020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76-3	충청남도 공주시 변영1로 153	2010020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31-2	충청남도 공주시 흡수골길 21	20100112	역사적특성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335-2	충청남도 공주시 관결2길 24-18	20100112	역사적특성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32-4	충청남도 공주시 신덕마을길 12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02-14	충청남도 공주시 변영2로 40-5	2010020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03-4	충청남도 공주시 변영2로 40-10	2010020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39-4	충청남도 공주시 변영2로 54-3	2010020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39-7	충청남도 공주시 변영2로 58-1	2010020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41-1	충청남도 공주시 변영2로 54	2010020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41-17	충청남도 공주시 변영3로 53	2010020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41-20	충청남도 공주시 변영2로 54-14	2010020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41-21	충청남도 공주시 변영2로 54-16	2010020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41-8	충청남도 공주시 변영2로 54-12	2010020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42-6	충청남도 공주시 변영2로 47	2010020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52-3	충청남도 공주시 변영1로 84-6	2010020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69-3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27-24	20100112	자연마을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70-4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27-8	20100112	자연마을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산37-2, 37-2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492	20100202	지역특성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대룡리 555-1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새우재길 115-14	20120126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동원리 322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동막마을길 116-9	20100112	옛날에 산막이 많았던 곳으로 동쪽의 산막마을이라 하여 동막마을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쌍대리 275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토끼울길 139-44	20100112	옛날에 산토끼가 많이 살았으며 옥도망월형의 명당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토끼울길이라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조평리 149-1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벌뽕평말길 33-4	20100112	벌뽕이란 자연마을과 평말이란 자연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로 두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벌뽕평말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조평리 187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먹뱅이길 46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239-19, 239-18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길 127	20100112	쌍신동을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쌍신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311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길 43	20100112	쌍신동을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쌍신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312-2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길 37	20100112	쌍신동을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쌍신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옥곡동 135-2	충청남도 공주시 마골길 142	20100202	마을이 처음 생길때 마집부터 세워졌고 그 후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옥곡동 771-1	충청남도 공주시 장자울1길 9	2010020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24-19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339	20100202	지역특성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284-11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288	20100202	지역특성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284-22, 284-21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282	20100202	지역특성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414	충청남도 공주시 은개길 51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07-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심산길 27	20100112	예전부터 귀산2리 전체를 심산이라 불렀다 하여 심산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358-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도고머리길 54	20100112	마을지형이 도투마리처럼 생겼다 하여 도투마리라 불리다 도고머리로 바뀌었다 하여 도고머리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66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역골1길 23-7	20100112	단편역이 있을때 역마을을 먹이던 골짜기에 마을이 생기자 마을을 먹이던 골짜기라 하여 역골1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동곡리 250-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군량길 25-45	20100112	조선 인조때 이괄의 난이 일어났으나 인조가 공주로 피난하였을때 여기서 사는 노숙이 군량300석을 모아서 바친 곳이라 하여 군량골이라 하여 군량골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6-5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길 130-1	20100112	행정구역 명칭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13-8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375-15	20120125	내산리, 도천리, 동곡리, 반촌리, 목천리를 관통하는 도로로 도로의 기형인 내산의 명칭과 총칭인 목천의 명칭을 활용하여 내산목천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789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목천2길 101	20100112	목천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목천2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반촌리 129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반촌길 33	20100112	반촌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반촌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330-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우성길 59-17	20100202	우성면 중심지를 관통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우성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803-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성곡길 200	20100112	도로 끝 지점에 성곡사란 절이 있다하여 성곡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흥리 275-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공수원로 273	20090825	옛날 원님이 살았던 마을이라 하여 공수원로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 239-6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무재길 23-5	20100112	신수가 좋아 무당들이 제를 올리던 곳이라 하여 무재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264-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신대말길 65-7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신용리 24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공나루길 85	20100112	공나루 관광지를 가는 도로로 공나루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239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성머리길 17	20100112	옥성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성두리 또는 성두라 하여 성머리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74-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입동로 29-7	20100112	두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93-6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어천길 17-27	20111209	용봉리와 어천리를 관통하는 도로로 두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용봉어천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126-3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무성산로 688	20100112	신용리를 시작으로 도천리, 내산리, 한천리를 관통하는 도로로 끝지점이 무성산을 향한다. 하여 무성산의 명칭을 활용하여 무성산로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136-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무성산로 732-8	20100112	신용리를 시작으로 도천리, 내산리, 한천리를 관통하는 도로로 끝지점이 무성산을 향한다. 하여 무성산의 명칭을 활용하여 무성산로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173, 172-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무성산로 765-7	20100112	신용리를 시작으로 도천리, 내산리, 한천리를 관통하는 도로로 끝지점이 무성산을 향한다. 하여 무성산의 명칭을 활용하여 무성산로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219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무성산로 836-11	20100112	신용리를 시작으로 도천리, 내산리, 한천리를 관통하는 도로로 끝지점이 무성산을 향한다. 하여 무성산의 명칭을 활용하여 무성산로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26-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무성산로 544	20100112	신용리를 시작으로 도천리, 내산리, 한천리를 관통하는 도로로 끝지점이 무성산을 향한다. 하여 무성산의 명칭을 활용하여 무성산로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26-10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무성산로 536	20100112	신용리를 시작으로 도천리, 내산리, 한천리를 관통하는 도로로 끝지점이 무성산을 향한다. 하여 무성산의 명칭을 활용하여 무성산로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77-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홍굴길 61	2010020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78-6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홍굴길 68-5	2010020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180-3	충청남도 공주시 시어골1길 131	20100112	자연마을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용진동 319-1, 319-2, 319-3, 328, 321-2, 322-1, 322-4, 320	충청남도 공주시 고마나루길 30	20100112	지역특성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동 169-2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양지뜸길 22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후, 다른 지역과 중복되는 도로명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구역 명칭을 첨가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동 328-1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동길 149-21	20100112	월미동을 관통하는 주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월미동길이라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 481-5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현로 57	20100112	행정구역 명칭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 91-2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현로 105	20100112	행정구역 명칭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계리 480-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495-60	20100112	유구읍에서 마곡사를 향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과 마곡사의 명칭을 활용하여 유구마곡사로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계리 481-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495-11	20100112	유구읍에서 마곡사를 향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과 마곡사의 명칭을 활용하여 유구마곡사로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19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외곽로 54-14	20100112	행정구역 명칭과 도로특성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203-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덕곡길 155	20100112	덕곡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덕곡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21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덕곡길 158-35	20100112	덕곡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덕곡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28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덕곡길 238	20100112	덕곡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덕곡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585-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안양골1길 99	2010020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24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범당골길 20	20100112	옛날 이지역에 범당이 있었다 하여 범당골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297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명곡2길 227	20100112	명곡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명곡2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곡리 2-2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곡길 514	20100112	문곡리를 관통하는 주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문곡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곡리 68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암길 70	20100112	문곡리 마을의 주 도로로 문곡 1리를 예전에 문암리라 불렀다 하여 문암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40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외마루길 95	20100112	예전에 기와집이 있었던 마을로 기와집 마을이란 뜻에서 외마루길로 부여 후 다른지역과 도로명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구역 명칭 첨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662-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금계산로 266-77	20090825	금계산을 지나는 도로로 지역특성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203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서부실길 130-11	20120222	임서리의 보리밭 서쪽에 있는 마을로 부자동네가 되라는 뜻으로 서부실이라 부른다 하여 서부실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209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240-11	20100112	유구읍에서 마곡사를 향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과 마곡사의 명칭을 활용하여 유구마곡사로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38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우점사길 16	20100112	유구읍에서 마곡사를 향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과 마곡사의 명칭을 활용하여 유구마곡사로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464-1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76-4	20100112	도로의 끝지점이 우점사란 사찰을 향한다 하여 우점사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566-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38-20	20120109	유구읍에서 마곡사를 향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과 마곡사의 명칭을 활용하여 유구마곡사로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임석리 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명곡1길 38-2	20100112	명곡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명곡1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285-1, 285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강백년길 167-15	20120109	도로를 관통하는 마을에 강백년이란 옛 위인이 살았다 하여 강백년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420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강백년길 29	20100112	도로를 관통하는 마을에 강백년이란 옛 위인이 살았다 하여 강백년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479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1186-9	20090825	공주시 의당면과 연기군 전의면의 두 행정구역 명칭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산20-1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1231-126	20090825	공주시 의당면과 연기군 전의면의 두 행정구역 명칭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승정리 609-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지춘이길 84-22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승학리 59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712	20090825	공주시 의당면과 연기군 전의면의 두 행정구역 명칭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수춘리 226-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길 208-10	20100202	예전 의당리를 대표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의당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수춘리 248-69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신촌길 36-9	20120106	예전 수춘리를 신촌이라 불렀다 하여 옛 명칭을 활용하여 신촌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수춘리 790-2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아래태실길 32-42	20100112	새로 마을이 생겼던 태실이란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하여 아래태실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오민리 40-4, 41-3, 42-2, 42-3, 42-4, 42-5, 42-7, 42-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모란길 66	20100112	오민리, 상룡리, 화봉리를 거치는 도로로 옛날부터 모란이란 자연마을 명칭을 사용했다하여 모란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용암리 409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방축골길 99	20100202	예전 방축이 있는 곳에 마을이 있다하여 방축골길로 부여 후 행정구역 명칭 첨가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월곡리 371-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덕골길 3	20100112	덕곡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복합 반영하여 의당덕골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울정리 61-6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울정길 185	20100112	울정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울정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종흥리 224-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공골길 25-14	20100112	지형이 활모양으로 생겼다 하여 공골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종흥리 247-1, 22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공골길 25-16	20100112	지형이 활모양으로 생겼다 하여 공골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270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247-53	20090825	공주시 의당면과 연기군 전의면의 두 행정구역 명칭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839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301	20100112	산관동 전막을 기점으로 하여 의당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의당로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87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285	20100112	산관동 전막을 기점으로 하여 의당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의당로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 101-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길 97-1	20100112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구암리 225-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작은말길 29	20100112	원래부터 작은 마을이었다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구암리 24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구암새터길 38	20100112	본래의 자연마을 명칭 활용, 다른 지역과 중복되는 도로 명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구역 명칭 첨가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구암리 367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강샫골길 25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123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송선군로 630-35	20120125	오룡리 마을에 문화유적인 송선군묘가 있어 송선군로라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묵동리 569-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방축골길 30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산의리 155-5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읍달길 37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144-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용수막길 12	20100112	오룡정주형의 명당이 있다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359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와룡길 153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370-6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구례실길 21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오흥리 256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송선군로 489	20100112	오룡리 마을에 문화유적인 송선군묘가 있어 송선군로라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윤암리 121-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늦점1길 98-13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212-7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검바위로 233	20100112	주봉~이인 가는길 도로 옆에 검바위라는 유적물이 있어 유물의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235-9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은행길 28-3	20100112	길 옆에 500년된 은행나무가 있어 은행길이라 지음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278-2, 557-7, 557-26, 557-20, 557-14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백제문화로 1261	20090825	역사적특성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561-5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검바위로 560	20100112	주봉~이인 가는길 도로 옆에 검바위라는 유적물이 있어 유물의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조봉리 104-3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선근리1길 34	20100112	신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서당과 유사한 기관이 있었다하여 생긴 자연마를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조봉리 121-5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승선군로 33-6	20100112	오룡리 마을에 문화유적인 승선군묘가 있어 승선군로라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153-1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사덕골길 91	20100112	이지역에 피난 온 네 사람이 있었는데 피난을 잘 했다하여 생긴 자연마를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263-8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대학길 72	20100112	영상정보대학으로 향하는 길이라 하여 대학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302-44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전원마을2길 56-16	20100112	전원마을이 형성되었다 하여 전원마을길로 부여 후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514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외암길 109	20100112	창백에서 물 건너 큰 마을의 바깥쪽에 자리하고 있다 하여 생긴 자연마를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514-3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외암길 111	20100112	창백에서 물 건너 큰 마을의 바깥쪽에 자리하고 있다 하여 생긴 자연마를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도계리 151-15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참시름골길 11	20100112	찬 물이 나는 샘이 있었던 마을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를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도계리 163-1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장기초교길 9-1	20100112	장기초등학교를 지나는 길이라 하여 장기초교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도계리 163-15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장기초교길 15	20100112	장기초등학교를 지나는 길이라 하여 장기초교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봉안리 292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봉안산소골길 23-25	20120111	해당 자연마를 명칭을 활용 후, 다른 지역과 중복되는 도로 명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구역 명칭을 첨가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봉안리 342-1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장척로 551	20100112	914년에 장기면을 장척면이라 불렀으며 현재 구 도로인 점을 감안, 장기면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장척로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봉안리 342-10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장척로 559	20100112	914년에 장기면을 장척면이라 불렀으며 현재 구 도로인 점을 감안, 장기면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장척로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봉안리 342-7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장척로 553	20100112	914년에 장기면을 장척면이라 불렀으며 현재 구 도로인 점을 감안, 장기면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장척로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봉안리 342-8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장척로 555	20100112	914년에 장기면을 장척면이라 불렀으며 현재 구 도로인 점을 감안, 장기면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장척로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봉안리 342-9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장척로 557	20100112	914년에 장기면을 장척면이라 불렀으며 현재 구 도로인 점을 감안, 장기면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장척로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봉안리 343-1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장척로 547	20100112	914년에 장기면을 장척면이라 불렀으며 현재 구 도로인 점을 감안, 장기면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장척로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봉안리 421-1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장척로 486-27	20100112	914년에 장기면을 장척면이라 불렀으며 현재 구 도로인 점을 감안, 장기면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장척로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 393-1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길 141	201110630	해당 자연마를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승문리 65-5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초당바위길 7-1	20100112	해당 자연마를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승문리 72-8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문성1길 78-23	20100112	마을의 주진입도로 승문의 옛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승선리 187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금동길 66	20100112	산세가 수려하여 가을에는 금색에 무르익는 절경을 이룬다 하여 생긴 자연마를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승선리 273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큰말1길 92-26	20100112	해당 자연마를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승선리 445-2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장척로 18-10	20100112	914년에 장기면을 장척면이라 불렀으며 현재 구 도로인 점을 감안, 장기면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장척로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승선리 460-1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요동길 32	20100112	해당 자연마를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승선리 506-2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요동길 110-9	20100112	해당 자연마를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승선리 637-4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차령로 2037	20090825	지역 특성 반영(충남 대표 산맥로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은용리 346-3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바탕길 55	20100112	나무꾼들이 장을 치던 곳의 바탕이 되는 곳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를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하봉리 147-4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짐시렁골길 66	20100112	해당 자연마를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하봉리 183-1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할미터길 65-16	20100112	예전에 공주에서 제일가는 부자 할머니가 살았던 곳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를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하봉리 402-5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벌신당길 16-1	20100112	벌신당을 하던 신당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를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하봉리 60-2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황골길 28	20100112	해당 자연마를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49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중앙길 228	20100202	정안면의 중심이 되었던 옛길로 중앙 자를 활용하여 정안중앙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191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상수절덕길 16	20100112	상수들이란 마을과 절덕이란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로 두 마을의 자연마를 명칭을 활용하여 상수절덕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3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상수절덕길 53-2	20100112	상수들이란 마을과 절덕이란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로 두 마을의 자연마를 명칭을 활용하여 상수절덕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33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중앙길 233	20100202	정안면의 중심이 되었던 옛길로 중앙 자를 활용하여 정안중앙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516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농공단지길 32-112	20100112	사현리에 있는 농공단지를 관통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첨가하여 정안농공단지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517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농공단지길 32-102	20100112	사현리에 있는 농공단지를 관통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첨가하여 정안농공단지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산성리 185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산뱅이길 65-1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산성리 208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산뱅이길 65-3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석송리 79-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장원길 74	20100112	장원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장원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어물리 262-5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쇠내골길 35	2010020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월산리 363-1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마곡사로 364	20100112	정안면에서 마곡사를 향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과 마곡사의 명칭을 활용하여 정안마곡사로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118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차령고개로 140-19	20090825	지형적 특성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175-1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풍정길 50	20100112	필풍정이란 정자가 있다하여 풍정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태성리 206-6, 206-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인풍태성길 237	20100112	인풍리와 태성리를 관통하는 도로로 두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인풍태성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태성리 24-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아래개티길 38-7	20100112	태성리의 큰 마을로서 개티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아래개티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평정리 33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직골길 41-19	20100112	뒷동산 형국이 사자형이라고 한다 하여 사직골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주미동 219-1	충청남도 공주시 화산동길 39	20100112	선녀들이 내려와서 쉬었다가 만나는 곳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주미동 245-2	충청남도 공주시 주미길 9	20100112	행정구역 명칭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광명리 208-5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광명길 297	20110630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광명리 213-8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광명길 290	20110630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대학리 247-9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임천고개로 20	20100112	대학~견등을 지나는 고개가 임천고개라하여 임천고개길이라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대학리 490-1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오두재길 122-2	20100112	지형이 까마귀 머리 모양이라 하여 생긴 지명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 392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하효동길 22	20100112	옛날에 효자가 많이 있었다는 마을의 아래쪽에 있다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 561-13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금백로 1455	20090825	금강과 백제의 앞자를 활용하여 금백로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117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창양달길 77-32	20100112	분창 - 양달이란 마을을 관통하는 길로 두마을의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하여 길이를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117-1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창양달길 77-36	20100112	분창 - 양달이란 마을을 관통하는 길로 두마을의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하여 길이를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118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창양달길 77-42	20100112	분창 - 양달이란 마을을 관통하는 길로 두마을의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하여 길이를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261-15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금우사길 2-32	20120216	금우절이 있었다하는 자연마을 명칭 활용과 같은 의미의 절 또는 사라는 단어 중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를 붙임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45-1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금우사길 33	20100112	금우절이 있었다하는 자연마을 명칭 활용과 같은 의미의 절 또는 사라는 단어 중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를 붙임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582-1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큰선덕길 77	20100112	덕이 있는 사람이 많이 살았다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549-2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만마름길 125	20100112	안영리를 관통하는 길의 고개 정상 이름이 만마름이라 만마름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화정리 394-7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효자문길 17-36	20120106	효자가 살았던 마을이며 효자문이 있어서 효자문길이라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태봉동 26-2	충청남도 공주시 남안골길 28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부여건물 중 도로명주소 변경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3. 7.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공주시 검상안길 156외 7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1)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3.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세부내역

변경전		변경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종전주소	변경전	변경후	변경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충청남도 공주시 김상동 729-5	충청남도 공주시 김상동 729-5	충청남도 공주시 공단길 33-15	충청남도 공주시 김상인길 156	충청남도 공주시 김상인길 156	충청남도 공주시 김상인길 156	20100112	김상동 마을 안에 위치한 길로 김상인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구영리 28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구영리 28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상성길 148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상성길 148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상성길 148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상성길 148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46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46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봉곡길 78-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봉곡길 78-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봉곡길 78-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봉곡길 78-9	20100112	마을 지형상 봉황이 일을 품고 있는 모양이라 봉곡 또는 새울 이라 부르다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내룡리 64-7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내룡리 64-7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외남면이길 118-5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외남면이길 118-5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외남면이길 118-5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외남면이길 118-52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79-1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79-11, 79-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별당마루길 4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별당마루길 4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별당마루길 4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별당마루길 49	20100112	별당마루라는 지명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 산1-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 322, 산1-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유평양말길 57-1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유평양말길 57-1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유평양말길 57-1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유평양말길 57-13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후 행정구역 명칭 첨가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증장리 산47-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증장리 33-7, 산47-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김사로 543-2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김사로 543-2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김사로 543-2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김사로 543-21	20100112	계룡면 소재지에서 계룡산 감사로 가는 길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김사로라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화은리 115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화은리 115-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여사울2길 4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여사울2길 4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여사울2길 4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여사울2길 44	20100112	선비들이 자리하는 곳이라 하여 생긴 여사울, 여사를 지명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 250-1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 250-3, 250-1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535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535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535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535	20100112	지형적특성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 529-1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 532-1, 529-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로 90-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로 90-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로 90-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로 90-1	20100112	신관동 전마을 기점으로 하여 의당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의당리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 205-8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 205-8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도남길 139-28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도남길 139-49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도남길 139-49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도남길 139-49	20100112	행정구역 명칭과 구왕~중장의 장악고개를 관통하는 도로로, 왕흥장악이라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산102-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639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왕흥장악로 72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왕흥장악로 72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왕흥장악로 72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왕흥장악로 727	20100112	내룡리의 예전 명칭 왕흥과 구왕~중장의 장악고개를 관통하는 도로로, 왕흥장악이라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344-2, 344-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344-2, 344-3, 345-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상하신길 45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상하신길 45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상하신길 45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상하신길 456	20100112	상신과 하신을 관통하는 도로이며 상신의 상자와 하신의 하자를 활용하여 상하신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555-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555-4, 555-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서봉길 1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서봉길 1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서봉길 1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서봉길 12	20100112	반포로 되어 있는 산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동 269-1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동 269-1, 269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안터길 82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안터길 82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안터길 82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안터길 82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동 340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동 341	충청남도 공주시 신경지길 72-9	충청남도 공주시 신경지길 72-9	충청남도 공주시 신경지길 72-9	충청남도 공주시 신경지길 72-9	20100112	해당 행정구역명과 장터가 있는 곳이라고 하여 장터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295-21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295-20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호계정타2길 7-5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호계정타2길 7-5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호계정타2길 7-5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호계정타2길 7-5	20100112	해당 행정구역명과 장터가 있는 곳이라고 하여 장터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295-20, 295-21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295-21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호계정타2길 7-3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호계정타2길 7-3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호계정타2길 7-3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호계정타2길 7-3	20100112	역사적특성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동 127-10, 127-35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동 127-10, 127-35	충청남도 공주시 고개마을길 15-1	충청남도 공주시 고개마을길 15	충청남도 공주시 고개마을길 15	충청남도 공주시 고개마을길 15	20100112	역사적특성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동 31-54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동 31-54	충청남도 공주시 고개마을길 15	충청남도 공주시 고개마을길 15	충청남도 공주시 고개마을길 15	충청남도 공주시 고개마을길 15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757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757	충청남도 공주시 건너들길 28	충청남도 공주시 건너들길 28-1	충청남도 공주시 건너들길 28-1	충청남도 공주시 건너들길 28-1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764-2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764-2	충청남도 공주시 건너들길 28	충청남도 공주시 건너들길 28	충청남도 공주시 건너들길 28	충청남도 공주시 건너들길 28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4-82, 24-122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4-82	충청남도 공주시 변영1로 130	충청남도 공주시 변영1로 130	충청남도 공주시 변영1로 130	충청남도 공주시 변영1로 130	2010020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 84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 86	충청남도 공주시 소윗재길 17	충청남도 공주시 소윗재길 17	충청남도 공주시 소윗재길 17	충청남도 공주시 소윗재길 17	20100202	소가 누워 있는 형태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임동리 53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임동리 53-2, 53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굴터안길 25-9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굴터안길 25-9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굴터안길 25-9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굴터안길 25-9	20100112	굴터라고도 부르는데 굴터고개 아래에 자리한 마을이라 하여 굴터안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산2-10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산2-10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길 143-18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길 147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길 147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길 147	20100112	쌍신동을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쌍신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오곡동 770	충청남도 공주시 오곡동 770, 769	충청남도 공주시 장자울1길 13	충청남도 공주시 장자울1길 13	충청남도 공주시 장자울1길 13	충청남도 공주시 장자울1길 13	2010020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05-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05-8, 105-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뚝밭길 150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뚝밭길 150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뚝밭길 150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뚝밭길 150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91-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91-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임나무길 39-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임나무길 39-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임나무길 39-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임나무길 39-1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49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49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정사골길 36-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정사골길 3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정사골길 3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정사골길 32	20100112	예전에 정승판서가 났다고 하여 정사골길이라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반촌리 213-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반촌리 213-2, 213-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반촌길 130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반촌길 130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반촌길 130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반촌길 130	20100112	반촌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반촌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20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202, 20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성곡길 68-1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성곡길 68-1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성곡길 68-1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성곡길 68-13	20100112	도로 끝 지점에 성곡사란 절이 있다하여 성곡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16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155-7, 16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자동차로 47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자동차로 47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자동차로 47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자동차로 471	20090825	지형적특성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335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335-9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45	좌동	20100112	해당자연마을 명칭 활용 후 다른지역과 도로명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구역 명칭 첨가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62-5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62-7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신업골길 1-10	좌동	20100112	지형이 신발의 모양과 비슷하다하여 신업골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용진동 122-3, 122-2	충청남도 공주시 용진동 122-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산1길 51	좌동	2010011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용진동 122-3, 122-2	충청남도 공주시 용진동 122-3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산1길 51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산1길 51-1	2010011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용운면 만천리 359-1, 351-1	충청남도 공주시 용운면 만천리 359-1, 359-2	충청남도 공주시 용운면 작은골길 33-12	좌동	20100202	남쪽에 있는 동원이 골짜기의 작은마을이라 하여 작은골1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용운면 문곡리 271-2	충청남도 공주시 용운면 문곡리 265, 271-2	충청남도 공주시 용운면 문곡길 212-16	좌동	20100112	문곡리를 관통하는 주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문곡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용운면 문곡리 420-6	충청남도 공주시 용운면 문곡리 420-6, 420-4	충청남도 공주시 용운면 문곡항수동길 152-60	좌동	20110630	골짜기가 깊어 그 모양이 마치 동쪽을 만들때 사용하는 용수와 비슷하다 하여 용수골길로 부여 후 행정구역 명칭 첨가
충청남도 공주시 용우리 209	충청남도 공주시 용우리 209-1	충청남도 공주시 용우리 206-13	충청남도 공주시 용우리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206-13	20100112	유구읍에서 마곡사를 향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과 마곡사의 명칭을 활용하여 유구마곡사로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용우리 413-3	충청남도 공주시 용우리 413-3, 602	충청남도 공주시 용우리 금계산로 17-1	좌동	20090825	금계산을 지나는 도로로 지역특성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용우리 610-3	충청남도 공주시 용우리 610-3	충청남도 공주시 용우리 금계산로 61-23	충청남도 공주시 용우리 금계산로 43-2	20090825	금계산을 지나는 도로로 지역특성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용우리 295-1	충청남도 공주시 용우리 295-1, 295-3	충청남도 공주시 용우리 탑골리 252-5	좌동	20100112	행정구역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48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48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일로 1186-1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일로 1186-7	20090825	공주시 의당면과 연기군 전의면의 두 행정구역 명칭 복합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용암리 10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용암리 102, 103, 10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용암로 300-21	좌동	20090825	지명과 행정구역 명칭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용현리 10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용현리 102, 101, 10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용현길 26-16	좌동	20100112	용두산의 하리쪽에 마을이 있다 해서 용현 또는 용고개라 하며 평소 주민들이 용현이라 부른다 하여 용현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월곡리 314-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월곡리 314-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월곡로 764-5	좌동	20100112	신관동 전마을 기점으로 하여 의당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의당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224, 224-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22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공굴길 25-1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공굴길 25-16	20100112	지형이 활모양으로 생겼다 하여 공굴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224, 224-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224-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공굴길 25-14	좌동	20100112	지형이 활모양으로 생겼다 하여 공굴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247-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247-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공굴길 25-16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공굴길 25-20	20100112	지형이 활모양으로 생겼다 하여 공굴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구암리 165-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구암리 165-1, 165-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김바위로 289-14	좌동	20100112	주봉~이인 가는 길로 옆에 김바위라는 유적이 있어 유물의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구암리 357-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구암리 357-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강사골길 14-6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강사골길 18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구암리 367-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구암리 367-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강사골길 20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강사골길 17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발양리 산24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발양리 산24, 169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고분터로 372-35	좌동	20100112	발양 ~ 반송을 지나는 길의 고개 이름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신흥리 37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신흥리 374-1, 374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안나추길 68	좌동	20100112	나추골 안으로 마을이 있다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327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328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백제큰길 808	좌동	20090825	역사적특성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235-1, 235-4, 235-9, 235-10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235-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은행길 28	좌동	20100112	길 옆에 500년된 은행나무가 있어 은행길이라 지음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235-1, 235-9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235-4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은행길 28-1	좌동	20100112	길 옆에 500년된 은행나무가 있어 은행길이라 지음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235-9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235-9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은행길 28-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은행길 28-3	20100112	길 옆에 500년된 은행나무가 있어 은행길이라 지음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218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218-3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대학길 205-3	좌동	20100112	영상정보대학으로 향하는 길이라 하여 대학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대교리 266-3, 267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대교리 266, 266-3, 266-4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발실길 253-21	좌동	20100112	발나무를 많이 심은 마을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동현리 567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동현리 567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동현리 348-87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요동길 97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산해리 441, 443-1, 438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산해리 441, 443-1, 438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영평사길 124	좌동	20100112	도로구간의 끝자리에 영평사란 절이 있고 마을 주민 모두가 영평사를 향하는 길이라 인사, 영평사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송문리 65-1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송문리 65-1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요동길 64-9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초당바위길 7	20100112	마을의 주진입도로 송문의 옛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장안면 석송리 79-2	충청남도 공주시 장안면 석송리 79-2	충청남도 공주시 장안면 신흥길 3-7	좌동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대화리 245-10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대화리 247-5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향양말길 77-68	좌동	20100112	두 냇물이 마을 앞에서 합쳐지므로 합천이라 불린다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121-2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121-1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향양말길 77-68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향양말길 77-68	20100112	분창 - 양들이란 마을을 관통하는 길로 두마을의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하여 길이를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산14-2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121-2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향양말길 77-70	좌동	20100112	분창 - 양들이란 마을을 관통하는 길로 두마을의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하여 길이를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산14-2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121-2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향양말길 77-70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향양말길 77-70	20100112	분창 - 양들이란 마을을 관통하는 길로 두마을의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하여 길이를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석각리 504-12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석각리 505-3, 504-21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통산3길 4-6	좌동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과 일련번호 부여 방식 혼합 활용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5조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3. 7.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공주시 갑골길 39-26 외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1)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3.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비고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885-2	감골길 39-26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향지리 124	도람말길 13-1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교동 226-1, 233-2, 242, 241, 233-8	향교1길 33-10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 657-2	소지미길 23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78-8	홍골길 68-3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산112	문금길 496-17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도계리 163-6	장기초교길 10-1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송문리 65-1	문성1길 64-7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515, 516	되재2길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대학리 247-5	임천고개로 22		건물말소	
충청남도 사곡면 계실리 133-7	계실양촌길 17-1		건물말소	
충청남도 탄천면 화정리 114-2	화정새뜸길 7		건물말소	
충청남도 탄천면 화정리 114-4	화정새뜸길 6		건물말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우리시 신관동 18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내 「공주대학교 대학본부 신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과(☎041-840-854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3월 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공주대학교 대학본부 신축공사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도시계획시설 (학교:대학교)	356,337 (금회 7,350)	○ 대학본부, 재활용품분류장 신축공사 -대학본부:건축면적(1,648.03㎡) -재활용품 분류장:건축면적(140.00㎡)

라. 사업시행자 : 공주대학교총장

마. 사 업 기 간 : 2012. 3(인가일) ~ 2015. 12.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본번	부번								
	계				357,937	356,337					
1	신관동	182		학교	354,253	354,253	교육과학 기술부				
2	"	545		구거	736	736	농림부				
3	"	564	3	"	275	275	"				
4	"	177	10	"	25	25	공주시				
5	"	166	1	대	329	329	홍남순	공주 신관동 67			
6	"	167	1	"	4	4	"	"			
7	"	242	1	전	233	233	이영수	공주 신관동 210			
8	"	산9	86	임야	2,082	482	유근환	대전 서구 내동38-15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2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시청 및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 기 간 : 2012년 3월 5일 ~ 3월 25일
- 장 소 : 공주시 세무과 ,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및
공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house.gongju.go.kr>)
- 내 용 : 2012년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2년 3월 5일 ~ 3월 25일
- 제출 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거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출 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 처 :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제출 방법 :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 서식(인터넷 다운로드 가능)에 기재하여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2012. 3. 5.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고 제2012-266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년 3 월 15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등으로 인해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일부내용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공고 방법 변경 (안 제5조)

- 공고일 통합 : 임용예정 인원 10명 기준에 따라 시험공고일 차등 → 임용예정인원에 관계없이 응시원서접수 시작일의 20일전으로 통일

나. 저소득층 응시자의 응시수수료 면제 근거마련 (안 제7조제3항)

- 다. 특별임용 ⇒ 경력경쟁임용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공개경쟁임용 외의 공무원 신규임용의 명칭을 “특별임용”에서 “경력경쟁임용”으로 변경

라. 경력경쟁임용시 학력제한 폐지 및 고졸자의 공무원 확대 등에 따른 임용요건 추가 (안 제10조, 제15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19조)

- 연구직·지도직 경력경쟁임용 응시자격으로 학위소지 요건 폐지, 민간경력자 경력경쟁임용 요건 추가
- 고졸자의 공무원 충원 확대를 위한 경력경쟁임용 시험제도의 기술 계고 추천대상자에 고졸자 및 고졸예정자(18세)를 포함
- 학력제한 완화 차원에서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전직요건 추가
 - (현행) 학력 → (개정) 학력 또는 자격증

마. 법령 정비계획에 전 조문의 순환된 법령 용어로 정비

바.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반영 (안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7의3, 별표 7의4,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0의2(신설), 별표 11, 별표 15)

- 신설 : - 일반직 내 보건진료 직렬
 - 연구직 내 농식품개발 직류
- 통합 : - 행정·보건 의무직군 →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 (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
 - 생활지도직렬 생활직류 → 농촌지도직렬 농촌생활 직류
- 명칭변경 : 통신직렬 → 방송통신 직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인사담당관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 041) 840 - 2068

FAX : 041) 840 - 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로 한다.

제2조 중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를 “(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의2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를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5조 중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원서접수 시작일의 20일전”으로,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를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을 “응시하려는 사람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정하는 기간 내”를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

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응시결격사유등)”을 “(응시결격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8조제3항 중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9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0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제6항 및 제1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시함에 있어서”를 “실시하는 경우”로, “기타”를 “그 밖에”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전역 예정일 6월”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6개월”로, “응시하고자하는”을 “응시하려는”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2인”을 각각 “2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상당하는”을 “상응하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응용능력”을 “그 응용능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의사발표”를 “의사표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합격결정에 있어서는”을 “합격결정을 하는 경우”로, “평정한 때”를 “평정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가”를 “사람이”로, “재차”를 “다시”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에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에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여야 한다.

제14조의3제1항 전단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으로,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한하며”를 “한정하며”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중복되는 때”를 “중복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을 “「국가기술자격법」그 밖의 법령에 따른”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한하며”를 “한정하며”로,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을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득점한 자”를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를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시험 등”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이상이어야”를 “이상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의하고”를 “따르고”로, “임용권자가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특별 임용하고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특별임용대상자”를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로, “자로서”를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로, “자이어야”를 “사람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직렬이어야”를 “직렬여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여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또는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제7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자의 특별임용 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를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제8항 단서 중 “계산함에 있어서는”을 “계산하는 경우에는”으로, “대하여도”를 “대해서도”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이어야”를 “사람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을 “본다.”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을 “(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로,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별표 제10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제10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8조의 제목 “(특별임용의 인원제한)”을 “(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을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으로, “당해기관”을 “해당기관”으로 한다.

제19조 앞의 “제3장 임용”을 삭제한다.

제19조의 제목 “(전직 시험의 면제)”를 “(전직 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전직시험의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제19조제2항 중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를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로, “당해직급”을 “해당직급”으로, “별표 6에 의한다”를 “별표 7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할 수 있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20조 앞에 “제3장 임용”을 삽입한다.

제20조제1항 중 “합격한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을 “신청하려는 사람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2조에 따른”으로,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를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로,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작성함에 있어”를 “작성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제22조의 제목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를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로, “임용한 때”를 “임용한 경우”로,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를 “따라 임용후보자추천권자에게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자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을 “사람을 신규임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으로,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순위에 의한다”를 “순위에 따른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 의”를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을 “영 제33조제9항”으로, “당해계급”을 “해당계급”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7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을 “(겸임하는 경우의 겸임예정 직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영 제7조의4 제4항”을 “영 제7조의5 제4항”으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에 따라”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본청”을 “본청, 직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본청”을 “본청, 직속기관”으로, “보충함에 있어서는”을 “보충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당해업무”를 “해당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3조에 따른”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31조까지의 각 항 번호 다음을 한 칸 띄어 쓴다.

별표 2 제목 “연구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제10조 및 제15조제5항 관련)”을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전직시험 응시자격구분표(제15조제5항·제6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표 직렬 농업 연구 직류 농공란 다음에 농식품개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식품개발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자
-------	--

별표 3 제목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제10조 관련)”을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제15조 제5항·제6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표 직렬란 중 “생활지도”를

“농촌지도”로 하고, 직류란의 “전직류”를 “전직류(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로, “생활”을 “농촌생활”로 한다.

별표 4 표 직렬 간호란 다음에 보건진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	------	----------	----------	----------

별표 5 제목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 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을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로 하고, 제2호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중 기능 5급 란 “기능명장(6년)”을 “대한민국명장”으로, 기능 6급 란 “기능명장(2년)”과 기능 7급 란 “기능명장”을 각각 삭제하고, 비고란 제1호, 제1의2호, 제5호 중 “특별임용”을 각각 “경력경쟁임용”으로 하며, 제3호 및 제4호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하고 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5의2 제목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로 하고, 직렬 의료기술 직류 의료기술의 대상 자격증란 “기사:의공”과 “산업기사:의공”을 각각 추가하고 제1호 표 직렬란 중 “통신”을 “방송통신”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2호 제목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을 포함한다)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을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제목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를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로 하며, 같은 목 표 직렬 간호란 다음에 보건진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	------	--------------------	------------------	------------------	------------	--

별표 5의2 제2호나목 제목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 경력 구분표”를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 경력 구분표”로 하고, 같은 목 비고란 제2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한다.

별표 6 제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관련)”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제3항 관련)”로 하고, 제1호 표 직렬 농업연구 직류 농공란 다음에 농식품개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식품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생물공학), 영양사(5), 위생사(5)
-------	------------------	---------------------------------

별표 6 제1호 직렬 환경연구 직류 환경 연구관란에 “환경측정분석사(7)”를, 연구사란에 “환경측정분석사”를 각각 추가하고 비고란 제2호 중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하고, 제3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표 직렬 란 중 “생활지도”를 “농촌지도”로, 직류란의 “생활”을 “농촌생활”로 한다.

별표 6 제2호 비고란 제2호 중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하고, 제3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한다.

별표 7 제목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9조제1항)”을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9조제2항)”으로 하고 제1호 표 직렬 간호란 다음에 보건진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	------	--	----------	--

별표 7 제1호 표 직렬란 중 “통신”을 “방송통신”으로 한다.

별표 7의2 비고란 중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한다.

별표 7의3 제1호 제목 “행정·보건의무직군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을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로 하고,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을 별표 7의3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별표 7의3 제2호 제목 “기술직(연구·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을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로 한다.

별표 7의4 가호 표 직렬 보건란의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 중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에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에 “보건교육사 2급”을 추가하고,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보건교육사 3급

별표 7의4 가호 표 직렬 환경 직류 일반환경의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 중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에 “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을 추가하고 직렬 환경 직류 수질의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을 추가하고 직렬 환경 직류 대기의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를 추가한다.

별표 7의4 가호 표 직렬란 중 “통신”을 “방송통신”으로 한다.

별표 7의4 나호 표 직렬 공업연구 직류 물리란 다음에 농업연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업 연구	농업식품 개발	기술사: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식품, 생물공학, 축산 산업기사: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영양사, 위생사
----------	------------	--	-----------------------------------

별표 7의4 나호 표 직렬란 중 “생활지도”를 “농촌지도”로, 직류란의 “생활”을 “농촌생활”로 하고, 직렬 보건연구 직류 공중보건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란에 기사에 “의공”을, 산업기사에 “의공”을 추가한다.

별표 8 제목 “특별임용예정계급별경력기준”을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으로 하고, 표 임용예정직급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예정직급	2급· 연구관 지도관	3급· 연구관 지도관	4급· 연구관 지도관	5급· 연구관 지도관	6급·기능직 6급 이상· 연구사 지도사	7급·기능직 7급 이상· 연구사 지도사	8급· 기능직 8급	9급· 기능직 9급이하
--------	-------------------	-------------------	-------------------	-------------------	--------------------------------	--------------------------------	------------------	--------------------

별표 8 비고란 제2호 중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 표 직렬란 중 “통신”을 “방송통신”으로 하고 제2호 표 직렬 “생활지도”를 “농촌지도”로 한다.

별표 10 제목 “특별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를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로 한다.

별표 1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제목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19조제3항)”을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19조제4항)”으로 하고, 제1호 연구직의 직렬 농업연구 중 기술직란 직렬 “생활지도”를 “농촌지도”로, 직류 “생활”을 “농촌생활”로 하고 제2호 표 직렬 생활지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업연구	농촌생활
------	------	------	------

별표 15 제1호 표 직렬 간호란 다음에 보건진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	--	----------	--

별표 15 제1호 표 직렬란 중 “통신”을 각각 “방송통신”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 표 직렬 농업연구(농공) 다음에 농업연구(농식품개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생물공학, 축산) 영양사, 위생사
-----------------	--

별표 15 제3호 직렬 “생활지도”를 “농촌지도”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 비고란 중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0의2]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5조제6항 관련)

계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연구경력	8년	4년

비고: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 후 연구경력임.

현행	개정안
<p>제3조의2(인사위원회 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u>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전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p>	<p>제3조의2(인사위원회 수당 등) ----- ----- ----- <u>대하여는 예산의 범위</u>----- ----- -----.</p>
<p>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u>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u>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u>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u>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 ----- <u>실시하는 경우 응시원서접수 시작일의 20일전</u> ----- ----- ----- <u>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u> -----.</p>
<p>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등)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u>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u>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p>	<p>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등) ① ----- ----- ----- <u>응시하려는 사람은</u> ----- ----- <u>따른</u> ----- ----- ----- ----- ----- -----.</p> <p>② -----</p>

현행	개정안
<p>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u>자</u>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u>기간</u>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p>	<p>----- ----- ----- <u>사람은</u> ----- ----- <u>정하는 기간</u>----- ----- ----- ----- -----.</p>
<p>제7조(응시수수료) ① <u>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u>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u>각 호의 1</u>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7조(응시수수료)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u>영</u>”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 <u>사람은</u>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 ----- ----- ----- ----- -----.</p>
<p>1. ~ 3. (생략)</p> <p>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u>자</u>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 <u>사람이</u> ----- ----- -----.</p>

현행	개정안
<p>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8조(응시결격사유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p> <p>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p>	<p>----- ----- ----- ----- ----- -----.</p> <p>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u></p> <p>제8조(응시결격사유) ① ----- ----- ----- 따라 ----- ----- <u>사람은</u> ----- -----.</p> <p>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u>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u></p>

현행	개정안
<p>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p> <p>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 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제10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p> <p>1. (삭제)</p> <p>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p>	<p>③ 영 제59조에 따른 ----- ----- ----- 해당 ----- -----.</p> <p>제9조(응시연령) ----- ----- 사람은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삭제></p>

현행	개정안
<p>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 시험가. 연구관의 경우: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p> <p>나. 지도관의 경우: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소지자로서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p> <p>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p> <p>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p> <p>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 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시험</p> <p>가. 연구직 공무원: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p> <p>나. 지도직 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p>	<p><삭 제></p>
<p>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0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p>	<p>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 ----- 제15조제6항 및 제16조에 따라 -----</p>

현행	개정안
<p>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p>	<p>----- ----- ----- -----.</p>
<p>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u>제9조의 규정에 의한</u>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p>	<p>② ----- 그 ----- <u>그</u> <u>밖에</u> ----- <u>제9조</u> <u>에 따른</u> ----- ----- -----.</p>
<p>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u>실시함에 있어서</u> 연고지 임용 <u>기타 지역적 특수성을</u>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u>자로</u>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 <u>실</u> ----- <u>시하는 경우</u> ----- <u>그 밖</u> <u>에</u> ----- ----- ----- <u>사람으로</u> ----- -----.</p>
<p>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u>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u> <u>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u>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 학력 또는 거</p>	<p>④ ----- ----- <u>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경력</u> <u>경쟁임용시험</u> ----- ----- -----</p>

현행	개정안
<p>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p> <p>⑤ 임용권자가 <u>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u>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2조(전역예정지의 응시기간 계산 방법) 「<u>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u>」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 6월의 기간 계산은 <u>응시하고자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u> 부터 기산한다.</p> <p>제13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u>2인</u>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u>2인</u> 이상으로 한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 ----- -----.</p> <p>⑤ -----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u> ----- ----- -----.</p> <p>제12조(전역예정지의 응시기간 계산 방법) 「<u>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u>」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6개월 ----- 응시하려는 ----- -----.</p> <p>제13조(시험위원) ① ----- ----- <u>2명</u> ----- ----- <u>2명</u> ----- -----.</p> <p>② <u>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u></p> <p>③ <u>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13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② (생략)</p> <p>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p>	<p>제13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 ----- 범위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상 응하는 -----.</p>
<p>제14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p> <p>1. (생략)</p> <p>2. 전문지식과 <u>응용능력</u></p> <p>3. <u>의사발표</u>의 정확성과 논리성</p> <p>4. (생략)</p> <p>5.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p> <p>② 면접시험의 <u>합격결정에 있어서</u>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p>	<p>제14조(면접시험 기준) ① ----- ----- ----- 따라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그 응용능력</u></p> <p>3. <u>의사표현</u> -----</p> <p>4. (현행과 같음)</p> <p>5. ----- <u>그 밖의</u> -----</p> <p>② ----- <u>합격결정을 하는</u> <u>경우</u> -----</p>

현행	개정안
<p>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 이어야 한다.</p> <p>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단서 신설></p> <p>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자격증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p>	<p>② -----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p> <p>----- 따</p> <p>른 -----</p> <p>----- . 다</p> <p>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p> <p>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p> <p>-----</p> <p>-----</p> <p>-----</p>

현행	개정안
<p>포함 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p> <p>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p>	<p>-----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 ----- 한정하며 ----- ----- ----- ----- ----- 따른 ----- ----- ----- 중복되는 경우 ----- -----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 ----- 사람이 -----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 ----- 한정하며 ----- -----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 ----- ----- 따른 ----- -----</p>

현행	개정안
<p>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p> <p>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p> <p>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p>	<p>----- -----.</p> <p>③ ----- 제2항에 따라 ----- -----.</p> <p>④ ----- 제2항에 따른 ----- ----- 득점한 사람 -----.</p>
<p>제15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p> <p>①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p> <p>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p> <p>③ (생략)</p> <p>④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p>	<p>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 -----.</p> <p>② ----- ----- 해당하는 사람으----- ----- 제6조에 따라 -----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사람은 -- ----- ----- 사람으로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지방 연구직</p>

현행	개정안
<p>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 <u>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u>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u>임용권자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u></p> <p>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u>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졸업자를 특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특별임용대상자</u>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u>자로서</u>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u>자이어야 한다.</u></p>	<p>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시험 등 ----- <u>따른</u> ----- <u>이상여야</u> ----- . -----</p> <p>----- <u>따르고</u> -----</p> <p>----- <u>해당</u> -----</p> <p>⑤ ----- <u>제6조에 따라</u> -----</p> <p>----- <u>경력경쟁임용하고자</u> -----</p> <p>1. <u>경력경쟁임용 대상자</u>-----</p> <p>----- <u>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u> -----</p> <p>----- <u>사람여야</u> ----- .</p>

현행	개정안
<p>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2 및 별표9에서 규정한 <u>당해</u>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u>직렬이어야</u> 한다. <단서 신설></p> <p>3. (생략)</p> <p>⑥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p> <p>⑦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p>	<p>2. ----- ----- 해당 ----- ----- 직렬여야 ----- . 다만, <u>기능직공무원의 경우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한다.</u></p> <p>3. (현행과 같음)</p> <p>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여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 는 “<u>연구사 또는 지도사</u>” 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또는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u>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u></p> <p>⑦ ----- ----- 제6조에 따라 ----- -----</p>

현행	개정안
<p>는 <u>자의 특별임용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u></p> <p>⑧ <u>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다만,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u></p> <p>제16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u>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u></p> <p>② <u>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u></p>	<p>-- <u>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u></p> <p>⑧ <u>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계산하는 경우에는 ----- 대해서도 ----- .</u></p> <p>제16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 <u>사람은 ----- 사람여야 ----- .</u></p> <p>② <u>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 .</u></p>

현행	개정안
<p>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u>특별임용시험은“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u>으로 본다.</p>	<p>----- ----- <u>본다.</u></p>
<p>제17조(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u>특별임용</u>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 및 <u>별표 제10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u></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 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p>	<p>제17조(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u>경력경쟁임용</u>)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 ----- <u>경력경쟁임용</u>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u>별표 제10에 따른</u> ----- -----</p> <p>② 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u>경력경쟁임용</u>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p>
<p>제18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u>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u>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18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 ----- <u>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u>----- ----- <u>해당기관</u> ----- ----- -----.</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임용</u></p> <p><u>제19조(전직 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u></p> <p><u>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할 수 있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u></p> <p><u>③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u></p> <p><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u>제19조(전직 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전직시험의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u> <u>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u> <p><u>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 해당직급 ----- 별표 7과 같다.</u></p> <p><u>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할 수 있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따른다.</u></p> <p><u>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u></p>

현행	개정안
<p>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 임용 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3. 병역을 필한 자 <p>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24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면·동 우선 임용) 7급이하 공무원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p>	<p>----- -----.</p> <p>③ 제1항에 따른 ----- ----- 작성하는 경우에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p>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 임용한 경우 ----- ----- 따라 임용후보자추천권자에게 통지하여야 ----- -----.</p> <p>제24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면·동 우선 임용) ----- -----</p>

현행	개정안
<p>한 자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5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u>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u></p> <p>③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횡</u></p>	<p>-- <u>사람을 신규임용하는 경우</u> --- ----- ----- -----.</p> <p>제25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u>영 제38조제5항에 따른</u> ----- ----- <u>따른</u> ----- ----- ----- ----- ----- ----- <u>따른</u> ----- ----- ----- ----- -----.</p> <p>② <u>제1항에 따른</u> ----- ----- ----- <u>따</u> <u>라</u> -----.</p> <p>③ <u>제1항에 따른</u> ----- -----</p>

현행	개정안
<p>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p>	<p>----- 범위 ----- -----.</p>
<p>제27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p>	<p>제27조(특별승진임용기준)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u> ----- ----- -----</p>
<p>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p>	<p>제28조(겸임하는 경우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 ----- 제26조에 따라 ----- -----.</p>
<p>제29조(시 및 읍·면·동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p>	<p>제29조(시 및 읍·면·동간 인사교류) ①----- 본청, 직속 기관 ----- ----- -----.</p>

현행	개정안
<p>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시 <u>본청</u> 및 사업소의 결원을 <u>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동의 근무경력·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u>의하여</u>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u>의하여</u> 임용하여야 한다.</p> <p>제31조(민원창구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는 1년 이상 <u>당해업무에</u> 경험이 있는(시에는 8급 이상, 읍·면·동에서는 9급 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p> <p>②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u>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u>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u>자는</u>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p>	<p>----- -----.</p> <p>② -- <u>본청, 직속기관</u> ----- <u>보충하는 경우</u> ----- ----- -----.</p> <p>----- <u>따라</u> ----- ----- <u>따라</u> -----.</p> <p>제31조(민원창구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 <u>해당업무</u> ----- ----- -----.</p> <p>② ----- <u>영 제33조에 따른</u> ----- ----- ----- <u>사람은</u> ----- -----.</p>

공주시 공고 제 2012 - 275 호

「공주시 명예 면·동·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5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명예 면·동·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2012. 7.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반포면, 장기면, 의당면 3개면 21개리 지역주민이 세종시로 편입됨에 따라 오랫동안 우리시에서 함께 했던 생활을 영원히 기억하고
- 앞으로도 우리시와 역사·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공주인으로서 긍지와 자긍심을 갖도록 공주시 명예 면·동·리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된 지역주민과 앞으로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역사·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상생발전협력을 통한 지역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주시 명예 면·동·리제 운영

나. 명예시민증 수여(안 제3조)

편입지역에 주소지를 둔 사람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공주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

다. 설치(안 제4조)

명예 면·동·리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입지역 주민들과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

라. 기능(안 제5조)

- 공주시와 편입지역에서 추진하는 역사·문화·예술·체육행사 등 상호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간 조정 및 상생발전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 지역현안 과제 공동대응 논리 개발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마. 구성 및 운영 등(안 제6조)

협의회에 대한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는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다만, 같은 조례 제17조제2항 및 제5항의 위원과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은 해당 면·동의 관할 구역에 주소지를 둔 사람과 편입지역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서 명예 시민증을 수여한 사람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3.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세종특별시출범준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 314 - 702

전화 : 041)840-8737 FAX : 041)840-2164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명예 면·동·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공주시 명예 면·동·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공주시 명예 면·동·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된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역사·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상생발전협력을 통한 지역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주시 명예 면·동·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발전협력”이란 공주시 주민과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된 지역 주민간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상생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2. “편입지역”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된 3개면 21개리 지역

-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5개리)
-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11개리)
-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5개리)

3. “편입지역 주민”이란 반포면, 장기면, 의당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중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행정구역이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 편입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 할 수 있다

제4조(설치) 명예 면·동·리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입지역 주민들과 상생발전을 위한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주시와 편입지역에서 추진하는 역사·문화·예술·체육행사 등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간 조정 및 상생발전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현안 과제 공동대응 논리 개발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운영 등)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는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다만, 같은 조례 제17조제2항 및 제5항의 위원과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은 해당 면·동의 관할 구역에 주소지를 둔 사람과 편입지역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준용규정) 명예 면·동·리제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및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구농공단지 준공인가 공고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의거 유구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준공인가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공주시 경제과 (041-840-236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습니다.

2012. 03. 12.

공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유구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웅진코웨이(주) 대표 홍 준 기, 웅진식품(주) 대표 유 재 면
- 주 소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36-23(유구리 658번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58번지 일원
- 면 적 : 227,961.3m²(기정:129,296.5m², 확장:98,664.8m²)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2. 03. 12.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산업시설용지

- 사업시행자가 실수요기업에게 분양

나. 공공시설용지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은 그 시설(도로)을 관리할 공주시에 무상귀속

다. 녹지시설용지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신설되는 녹지시설은 그 시설(원형보전녹지)은 사업 시행자가 관리

■ 관리처분계획

-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총괄)

구분	면적(m ²)	관리처분계획	
총계	227,961.3		
공장용지	150,477.2	실소유자관리	
지원시설	3,867.4	실소유자관리	
공공시설용지	23,072.7		
	소계		
	도로	18,069.2	공주시에 무상귀속
	보행자 도로	1,289.3	실소유자관리
	공원	597.4	공주시에 무상귀속
	주차장	1,379.9	실소유자관리
	체육시설	1,149.0	실소유자관리
	배수지	587.9	기 준공완료 공주시에 무상귀속
녹지시설	소계	50,544.0	
	녹지용지	50,544.0	실소유자관리

6. 주요기반시설계획

1) 도로

규 모			사용형태	기 능	연 장	면적(㎡)	비 고
등 급	류 별	폭 원					
중로1	2호 간선	15-24	진입도로	국지도로	360	8,098.0	
중로2	2호 간선	12-20	진입도로	국지도로	730	9,310.2	
소로1	2호 간선	8	진입도로	국지도로	77	661.0	

2) 주차장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3-2	주차장	노외 주차장	유구리 696번지	1,379.90	2010.03	

3) 공원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3-3	웅진공원	소공원	유구리 664-2번지	597.40	2010.03	

4) 녹지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1-7	녹 지	완충녹지	유구리 699번지 일원	45,956.60	2010.03	
2-2	녹 지	완충녹지	유구리 693번지	1,546.20	2010.03	
2-3	녹 지	완충녹지	유구리 703번지	3,041.20	2010.03	

5) 배수지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1-5	배수지	배수시설	유구리 661번지	587.90	1989.01	기 준공완료

6) 체육시설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1-6	체육시설	운동시설	유구리 701번지 일원	1,149.0	2010.03	

공주시 공고 제 2012-277호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I. 개정 이유

이 조례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보건위생상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안전한 봉안과 보호관리가 필요하며 장사시설을 이용하는자에 대한 사용료와 봉안시설의 안치기간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사시설의 운영과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II. 주요 내용

가. 용어 정의 (안 제2조)

- 장사시설 : 화장·봉안·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
- 봉안시설 :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
- 유택동산 :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나. 사용료 면제 (안 제21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 사용료 감면 (안 제21조)

-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8조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 「재해구호법」 제2조제1항의 이재민

라. 봉안시설의 사용기간 (안 제24조)

-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안치기간은 15년
- 무연분묘 개장유골과 무연고·행여사망자는 10년

마.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안 제29조)

-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에게 위탁할 수 있다.

Ⅲ . 조례개정 세부 내용

- 공 주 시 장 사 시 설 설 치 및 운 영 조 례 전 부 개 정
조 례 안 : 붙임 1

Ⅳ.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미주소 성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IV. 참고 사항

1. 보 내 실 곳 : 공주시청 복지과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14-702
 - 전 화 : 041) 840-8050 FAX : 041) 840- 2811
2. 이 조례 개정안은 공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3.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4. “화장시설”이란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봉안시설”이란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7.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을 제고
2. 무분별한 사설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 문화의 장려를 위한 시책 마련·추진
3.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4.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수립·시행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장사연구관련 전문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제1항 및 별표 3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봉안시설 설치예정지가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능선 등으로 차폐되고 도로·하천·주택가 등에서 떨어져 있어서 주변상황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6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자연재해위험 지역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
3. 장사시설 설치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지역
4.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제2장 공동묘지

제7조(명칭 및 위치) 공동묘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매장의 대상) 공동묘지에 매장될 수 있는 사람은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연고 사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① 공동묘지를 사용하려면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묘지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① 공동묘지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하고, 합장의 경우에는 단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하여 부과한다.

② 제9조에 따라 공동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남은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장 전에 사용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묘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묘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공동묘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허가한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2조(분묘의 설치기준) 공동묘지의 분묘 1기당 사용면적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다.

제13조(분묘의 사용기간)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사용기간이 만료된 분묘의 처리) ① 사용자는 분묘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개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 또는 자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개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 및 자연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시설에 봉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6조(묘적부 등 기록·관리) ① 시장은 관할구역의 공동묘지에 대한 묘적부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묘적부 등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관리한다.

제3장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

제17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8조(사용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이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사용허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사용료)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4**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내지역, 대전·충남지역, 대전·충남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9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권자”라 한다)이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남은기간

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권자가 공설장사시설에 화장, 봉안 또는 매장 전에 사용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관내지역 거주자 중 공설장사시설 사용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다. 관내지역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불법체류 외국인 등의 경우

2. 사용료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경우

가.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나.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의 이재민

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권의 승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은 다음 각 호의 연고자 순으로 승계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5.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6. 형제자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시체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②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4조(봉안시설의 사용기간) ①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사용기간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유골의 인도) 사용권자가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으려면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개장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자연장의 사용기간) ① 자연장의 사용기한은 15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만료 시 모든 권한은 시로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자연장의 방법) ① 자연장을 하는 사람은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에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의 처리) ①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산골(散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협약의 갱신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사용하던 묘적부와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비품 등은 시에 귀속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3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공설장사시설에 새로운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아 증·개축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1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3. 수탁한 재산의 전대 또는 수탁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뜻을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부대시설 등의 귀속은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적용례) 이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013년 2월 1일까지는 사용료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2013년 2월 2일부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제3조(공동묘지 사용허가 분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분묘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공동묘지의 명칭 및 위치 (제7조 관련)

(단위: m²)

명 칭	위 치	지 적
계	26개소	2,126,840
유구리 공동묘지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산52	168,595
백교리 공동묘지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산26	4,760
만천리 공동묘지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산47	272,529
주봉리 공동묘지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산74, 산74-2, 산74-3	68,781
목동리 공동묘지	공주시 이인면 목동리 산21-1, 산21-4	62,681
운암리 공동묘지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산52-1	190,116
신영리 공동묘지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산71-1	20,727
삼각리 공동묘지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산121	110,685
내흥리 공동묘지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산20	18,744
중장리 공동묘지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산26	11,504
양화리 공동묘지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산13-2	18,102
죽곡리 공동묘지	공주시 계룡면 죽곡리 산36	22,017
송곡리 공동묘지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산7-1	40,760
온천리 공동묘지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산14-1	57,620
장암리 공동묘지	공주시 장기면 장암리 산15, 산15-2	21,454
은용리 공동묘지	공주시 장기면 은용리 110-1, 132-1	32,843
요룡리 공동묘지	공주시 의당면 요룡리 산12-1	96,919
유계리 공동묘지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 산70	127,835
가산리 공동묘지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	62,479
화봉리 공동묘지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산10-1, 173-5, 173-7	70,441
내촌리 공동묘지	공주시 정안면 내촌리 산6-1, 185-2	90,742
대성리 공동묘지	공주시 우성면 대성리 산29-12, 산29-16	60,604
가교리 공동묘지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 산10-1	144,279
봉정동 공동묘지	공주시 봉정동 산4	78,149
태봉동 공동묘지	공주시 태봉동 산9-1	242,380
월미동 공동묘지	공주시 월미동 산49-1, 산59-1	31,094

[별표 2]

공동묘지 사용료 (제10조 관련)

(단위: m²)

기준면적	사 용 료	비 고
10	10,000원	매장료, 잔디료는 공동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별표 3]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17조 관련)

시 설 명	명 칭	위 치	비 고
총 칭	공주하늘누리공원	충남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225	
화장시설	나 래 원		
봉안시설	하늘쉼터		

[별표 4]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제20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시 설 별		구 분	사 용 료		
			관내지역 거주자	대전·충남 지역 거주자	대전·충남 외 지역 거주자
화장시설		만 15세 이상(1구)	150,000	300,000	1,000,000
		만 15세 미만(1구)	120,000	250,000	1,000,000
		개장 유골(1구)	80,000	100,000	200,000
		죽은 태아(1구)	50,000	100,000	200,000
봉안시설		일반(1위, 15년)	500,000	1,000,000	1,000,000
		부부(2위, 15년)	1,000,000	2,000,000	2,000,000
		무연 유골(1위, 10년)	100,000	사용제한	사용제한
자연장지	수목장	1위(15년)	300,000	500,000	500,000
	잔디장	1위(15년)	300,000	사용제한	사용제한
유택동산		1위	10,000	10,000	10,000
		죽은 태아	5,000	5,000	5,000

공주시 공고 제 2012- 278호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I. 제정 이유

이규칙은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II. 주요 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 수목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 잔디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의 밑에 묻어 장사하는 것

나. 사용권의 승계 및 신고(안 제6조)

- 장사시설에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봉안시설의 안치방법(안 제8조)

- 봉안시설은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사용한다.

라.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 내에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으로 채워서 매장한다,
-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연으로 빠른 회귀를 위하여 골분과 흙으로 혼합하여 설치하여야한다.

바.관리·운영의 위탁(안 제13조)

- 장사시설의 위탁 운영 및 관리를 할수 있는 장사시설은 추모공원내 화장장동 식당·매점으로 한정한다.

III . 규칙제정 세부 내용

-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 붙임1

IV. 의견 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미 주소 성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IV. 참고 사항

1. 보 내 실 곳 : 공주시청 복지과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14-702

- 전 화 : 041) 840-8050 FAX : 041) 840- 2811

2. 이 조례 개정안은 공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www.gongju.go.kr) 고
시 ·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잔디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 밑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 ①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공설묘지 및 제19조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용신고서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2. 화장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3. 봉안시설을 사용(기간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4. 자연장지를 사용(기간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5. 유택동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묘지 사용허가증: 별지 제2호 서식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허가증: 별지 제8호 서식

③ 시장은 조례 제11조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용허가 취소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동묘지 사용허가 취소: 별지 제3호 서식
2.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허가 취소: 별지 제9호 서식

제4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묘적부 등) 조례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12호 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한다.

제6조(사용권의 승계 및 신고)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하거나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봉안시설 시설기준) 봉안시설에는 개인단·부부단 및 무연고 봉안함을 안치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봉안시설의 안치방법) ① 봉안시설은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사용하도록 한다.

② 부부 중 1명의 유골 안치는 부부단이나 개인단으로 선택하여 봉안신청이 가능하며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 사망 후 부부단으로 이동하여 안치할 수 있다.

제9조(유골의 인도)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개장(유골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연고자가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 내에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으로 100퍼센트 이상 채워서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하는 용기는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2.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연으로 빠른 회귀를 위하여 골분과 부드러운 흙(마사토 등)으로 혼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의 면적은 1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표석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직사각형 오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0센티미터로 한다.

제11조(수목장의 안치방법 등) ①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봉안함 수는 12위 이내로 하고, 봉안순서는 시계방향으로 차례대로 하며, 안치위치의 추모목으로부터 1미터 이내로 한다.

②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나무 종류로 바꾸어 식재할 수 있다.

③ 추모목은 사전 예약할 수 없으며, 매매 또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

제12조(잔디장의 안치방법) 잔디장은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위쪽으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며 그 열이 다 찾을 경우에는 다음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한다.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공설장사시설은 공주시하늘누리공원 내 화장시설동 식당과 매점으로 한정한다.

제14조(위탁계약 갱신)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15조(원상복구 및 변상)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자, 수탁자 및 관리자(관람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실제 비용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봉안시설 시설기준 (제7조 관련)

시 설 명		시 설 기 준
납골안치단	개 인 단	개인안치단은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깊이 3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한다.
	부 부 단	부부안치단은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깊이 3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한다.
	무연고단	개인안치단은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깊이 3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한다.
납 골 함		납골함은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이내로 내구성이 강한 것으로 한다.
위 패		납골안치단 위패는 가로 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내로 일련번호와 사망자 성명을 기록, 부착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공동묘지 사용허가증 (제3조제2항 관련)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동묘지 사용을 아래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귀하

묘지의 위치				묘지의 구분	
사 용 자	성 명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 성명	사 망 자 생년월일	사망자 주소	사망연월일	사망원인	
사용목적 및 기간	사체매장 년 (년 월 일 ~ 년 월 일)				
매장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사용종별	사용면적				
	단장, 합장여부				
	그 밖 에				
사 용 료					
비 고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묘설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묘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그 밖에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공동묘지 사용허가 취소 (제3조제3항 관련)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동묘지 사용허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귀하

묘지의 위치				묘지의 구분	
사 용 자	성 명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 성명	사 망 자 생년월일	사망자 주소	사망연월일	사망원인	
사용목적 및 기간	사체매장 년 (년 월 일 ~ 년 월 일)				
매장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사용종별	사용면적				
	단장, 합장여부				
	그 밖 에				
사 용 료					
사용허가 취소사유					

[별지 제5호 서식]

봉안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망 장 소	
	사 망 연 월 일		사 망 원 인	
사 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구분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5 년간)			
<p>「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주 소:</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공주시장 귀하</p>				

[별지 제6호 서식]

자연장지 사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망 장 소	
	사 망 연 월 일		사 망 원 인	
사 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구분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5 년간)			
<p>「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연장지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주 소:</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공주시장 귀하</p>				

[별지 제8호 서식]

제 호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허가증				
(제3조제2항 관련)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화 장 연 월 일	
	사 망 연 월 일		사 망 원 인	
사 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구분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비 고 (허가조건)	1. 위 사용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주시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납골시설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음. 3.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p>「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허가증을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공 주 시 장</p>				

[별지 제9호 서식]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허가 취소 (제3조제3항 관련)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허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귀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위치				
사 용 자	성 명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 성명	사 망 자 생년월일	사망자 주소	사망연월일	사망원인
사용목적 및 기간	봉안 및 자연장 년 (년 월 일 ~ 년 월 일)			
봉안 또는 자연장 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사용종별	사용면적 등			
	봉안시설			
	자연장지			
사 용 료				
사용허가 취소사유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묘지 사용료 반환신청서 (제4조 관련)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본인이 사용하고자 허가받은 공동묘지를 사정에 따라 반환하고자 하오니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공주시장 귀하

묘지의 위치				사용면적	m ²
사 용 자	성 명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사망자 성명	사 망 자 생년월일	사망자 주소	사망연월일	사망원인	
사용허가 년 월 일					
매장여부					
사용장소 묘지의 상황					
기납 사용료					
입금 계좌번호					
반환사유					
첨부서류	1. 허가증 2. 사용료 납부증명서				

[별지 제12호 서식]

(앞 쪽)

허가(신고)번호				묘적부 (제5조 관련)	담당	과장	확인
소재지							
지번		지목					
시설구분		면적(m ²)		분묘형태			
설치연월일		설치기수		시설물 설치현황			
보존묘지(분묘)여부							
설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 와의관계			
	주소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 와의관계			
	주소	전화번호		설치자 와의관계			
설치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추가매장(합장)							
면적							
분묘설치기수							
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							
설치·관리자(대표자)의 변경							
변경 사유							

(뒤 쪽)

사망자	성 명		성 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분 묘 설치일	
	등 록 기준지				사망날짜/ 장소		매 장 신고일	
	주 소				사인		설 치 만료일	
	설치변경사항							
	변 경 일		변 경 전			변 경 후		
	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							
	연장신청(변경)일		연장(변경)기간			연장(변경)사유		
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								
※ 위치(경도: 위도:)								

[별지 제14호 서식]

제 호				
공설장사시설 사용승계신청서 (제6조제1항 관련)				
승계사항	시설명칭			
	안치번호	제 호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승계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피승계자와의 관계		
승계사유				
<p>「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피승계자 주 소: 성 명: (인)</p> <p style="text-align: right;">승 계 자 주 소: 성 명: (인)</p> <p>공주시장 귀하</p>				
<p>※ 구비서류: 1. 피승계자 인감증명서 1통(승계 확인용) 2. 피승계자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p>				

[별지 제15호 서식]

제 호 공동묘지(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및 사용자 주소변경신고서 (제6조제2항 관련)				
사용내용	시 설 명			
	허가(안치)번호	제 호		
기존 사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현재 사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변경된 주소				
<p>「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묘지(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및 사용자 주소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공주시장 귀하</p>				

[별지 제16호 서식]

제 호 개장(유골인도) 신청서 (제9조제1항 관련)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연월일		안 치 번 호	
	납골연월일		개장할 장소	
	개장 사유			
신 청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p>「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사망자의 개장(유골인도)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공주시장 귀하</p>				
※ 구비서류: 1. 공설봉안시설 사용허가증 1부 2.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5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목적

- 각 장학생 종별, 학교급별 학업성적우수 장학생의 선발 자격 기준을 통일하여 장학생별 형평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 추구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중학생, 고등학생)
 - 이·통장자녀 장학생(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생(고등학생, 대학생)
- 2011년 충청남도 정기 종합감사 결과 「공주시 한마음장학회 장학금 지급」에 대한 처분요구사항의 시정 및 개선·보완
 -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원 조례」의 선발 자격기준 적용
- 장학생 선발 추천부서의 선발 자격기준 변경요청 의견 반영
 - 학업성적우수 장학생의 선발 자격조건 완화
 - 저소득주민자녀(사회과), 새마을지도자자녀(5도2촌과)

2. 주요내용

- 저소득주민자녀 우수장학생 선발 자격기준 변경(제2조제3항)
 -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저소득 다문화가정”으로 변경(안 제2조제3항제1호)
 - “평가가 ‘우’ 이상”을 “평가가 ‘미’ 이상”으로 변경(안 제2조제3항제1호가목)
 - “과목별 석차가 ”3등급 이내“를 ”과목별 석차가 5등급 이내“로 변경(안 제2조제3항제1호나목)
- 이·통장 자녀 우수장학생 선발 자격기준 변경(제2조제4항)
 - “평균학점 B학점 이상”을 “평균학점 C학점 이상”으로 변경(안 제2조제4항제1호가목)
- 새마을지도자 자녀 우수장학생 선발 자격기준 변경(제2조제5항)
 - “3등급 이내”를 “5등급 이내”로 하고, “학생으로 한다.”를 “학생으로 하며, 대학생(전문대학 포함) 선발은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의 과목별 석차 등급을 적용한다.”로 변경(안 제2조제5항제1호나목)
-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생 선발 심사 순위기준 변경(제2조제5항)
 - “충청남도지사, 공주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유공자의 자녀”를 “충청남도지사, 공주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유공자의 자녀” 및 새마을운동 중앙회장이 정하는 단체 회장의 표창을 받은 유공자의 자녀“로 변경(안 제2조제5항제4호다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시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 주소 : (우)314-70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공주시 시정담당관)
- 연락처 : 전화 041) 840-2055 FAX 041) 840-2831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저소득 다문화가정”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가목중 “ ‘우’ 이상”을 “ ‘미’ 이상”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중 “3등급 이내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를 “5등급 이내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하며, 신입생 학력검정고시 합격생은 전과목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4항제1호가목중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신입생은 고등학생 선발기준을 적용한다.”를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의 과목별 석차 등급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2조제5항제1호나목중 “3등급 이내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선발하고 신입생 학력검정고시 합격생은 전과목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를 “5등급 이내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선발하고

신입생 학력검정고시 합격생은 전과목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하며, 대학생(전문대학 포함) 선발은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의 과목별 석차 등급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2조제5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지사, 공주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유공자의 자녀 및 새마을운동 중앙회장이 정하는 단체 회장의 표창을 받은 유공자의 자녀

제2조제5항제4호라목중 “B학점 이상”을 “C학점 이상”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장학생 지원사업)</p> <p>③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p>1. 지원대상은 수급자, <u>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과학·기술·예술·체육 등 학예기능 우수 또는 효행심·봉사정신이 투철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u>으로 한다.</p> <p>가. 학업성적우수 중학생 선발은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 <u>‘우’이상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u>으로 한다.</p> <p>나. 학업성적우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 석차가 <u>3등급 이내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u>으로 한다.</p> <p>④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p>1. 장학생의 자격은 이·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제2조(장학생 지원사업)</p> <p>③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p>1. 지원대상은 수급자, <u>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저소득 다문화 가정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과학·기술·예술·체육 등 학예기능 우수 또는 효행심·봉사정신이 투철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u>으로 한다.</p> <p>가. 학업성적우수 중학생 선발은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 <u>‘미’이상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u>으로 한다.</p> <p>나. 학업성적우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 석차가 <u>5등급 이내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u>으로 하며, <u>신입생 학력검정고시 합격생은 전과목 70점 이상인 학생</u>으로 한다.</p> <p>④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p>1. 장학생의 자격은 이·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가. 학업성적우수 대학생(전문대학 포함) 선발은 직전학기 평균학점 <u>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신입생은 고등학생 선발기준을 적용한다.</u></p> <p>나. (생략)</p> <p>다. 학업성적우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 석차가 5등급 이내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u>한다.</u></p> <p>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p>1. (생략)</p> <p>가. (생략)</p> <p>나. ----- ----- <u>3등급 이내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선발하고 신입생 학력검정고시 합격생은 전과목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u></p>	<p>가. 학업성적우수 대학생(전문대학 포함) 선발은 직전학기 평균학점 <u>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의 과목별 석차 등급을 적용한다.</u></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학업성적우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 석차가 5등급 이내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u>하며, 신입생 학력검정고시 합격생은 전과목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u></p> <p>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 <u>5등급 이내 과목이 50% 이상인 학생으로 선발하고 신입생 학력검정고시 합격생은 전과목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하며, 대학생(전문대학 포함) 선발은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의 과목별 석차 등급을 적용한다.</u></p>

현행	개정안
<p>다. (생략)</p> <p>라. (생략)</p> <p>2. (생략)</p> <p>3. (생략)</p> <p>4. (생략)</p> <p>가. (생략)</p> <p>나. (생략)</p> <p>다. <u>충청남도지사, 공주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유공자의 자녀</u></p> <p>라. -----</p> <p>----- <u>B</u>학점 -----</p> <p>-----</p>	<p>다. (현행과 같음)</p> <p>라.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u>충청남도지사, 공주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유공자의 자녀 및 새마을운동 중앙회장이 정하는 단체 회장의 표창을 받은 유공자의 자녀</u></p> <p>라. -----</p> <p>----- <u>C</u>학점 -----</p> <p>-----</p>

공 고

공주시 공고 제2012-283호

공주 고도보존계획 승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주고도보존계획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5일

공 주 시 장

I. 공주고도보존계획 수립 목적 및 승인

가. 목적

- 공주고도의 역사적 실체와 골격 회복을 통하여 역사적 진정성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원도심 재생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주민지원을 통한 문화재와 주민의 상생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 근거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15조

나. 보존계획 수립

- 2009. 12. 공주고도보존계획 수립
- 연구용역 수행 : 국토연구원

다. 보존계획 승인 요청 및 승인

- 2010. 6. 29 공주고도보존계획 승인요청
- 2012. 3. 5 공주고도보존계획 승인

II. 공주고도보존계획 세부사항

가. 고도보존사업지구 범위

- 면 적 : 203.6만 m^2 (특별보존지구115.8만 m^2 , 역사문화환경지구 87.8만 m^2)
- 지정지역 : 반죽동, 중동, 산성동, 교동, 응진동, 금성동, 옥룡동을 포함한 총 7개 동에 걸친 지역
- 지정요소 : 고마나루, 공산성 및 옥녀봉성, 무령왕릉, 정지산유적, 대통사지, 제민천, 감영터 일대 등이 포함

나. 기본방향

- 자랑스러운 역사문화와 현대 도시기능이 어우러진 도시형 고도육성

- 고도골격의 구성 요소의 유기적 연계
- 공주 구도심의 통합적 역사문화경관 조성
- 공주 구도심 활력거점 조성으로 도심기능 유지·강화

다. 사업기간 및 투입예산 확보방안

- 사업기간 : 2012년~2021년(10년단위)
 - ※ 5년마다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고려 재검토
- 투입예산 확보방안(구성) : 국비·지방비 및 민간자본

라. 사업내용

① 사업규모 : 3개 부문, 19개 사업

② 사업내용

- 특별보존지구(6개 사업)

- 공산성 부근 발굴, 정비
- 고마나루일대 사유지 및 건물매입 및 주변정비
- 공주 감영터, 대통사지 발굴
- 옥녀봉성, 정지산유적, 고마나루터 발굴 및 연구 등

- 역사문화환경지구(12개 사업)

- 제민천 정비사업
- 왕릉교, 연문일대 상징가로 조성
- 백제숲 조성 등
- 고도환경개선(간판정비, 지중화사업)
- 복합용도 계획단위 단지 조성 및 개발상가, 주택) 등

- 기타사업(1개 사업)

- 고도보존 기반구축 사업(제도개선, 지역주민 협력체계구축 등)

③ 사업예산 : 3,230억원(10개년)

※ 세부 사업내용이나 예산규모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관련도서의 열람 및 연락처 : 공주고도보존계획 보고서는 아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충남 공주시 해당 동사무소 및 문화재과: (041)840-2681